

의안번호	2219442
의 퇴 인	유용원 의원
회 답 일	2026.08.28.
추 계 번 호	26C320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교·부사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억 3,600만원, 2031년 240억 8,9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99억 9,300만원(연평균 19억 9,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안 제16조의2 (이자의 면제)	936	1,734	2,393	2,441	2,489	9,993	1,999

주: 1. 가용 통계의 한계 및 입직 경로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신규 임용자만을 대상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였으므로, 법안 시행 당시 기존 임용자의 상환 현황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재정소요는 본 추계결과를 상회할 수 있음

2. 개정안은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이를 최대 상한인 3년으로 가정하고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이자의 면제)	채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제2항). 1.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또는 부사관 2.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3.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4.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이자의 면제)	○	· 대상자 수에 1인당 대출잔액과 대출금리를 곱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이용자가 장교·부사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이하 “장교 등”)으로 복무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려는 것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한국장학재단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는 군 복무자, 다자녀가구 자녀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이에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재원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의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으로 603억 5,900만원이 편성됨

* [참고자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예산 세부내역

□ 한국장학재단의 재정 구조 등을 고려하여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라 면제되는 대출이자액 전체로 함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4.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5.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채무자(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다만,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무자가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 현재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을 위해 발행한 재단채의 이자 비용을 보전하고 있어 예산에 직접 반영되는 재정증가분은 재단의 수입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로 발행되는 재단채의 이자비용임
-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이자 면제액이 전액 국가재정으로 지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에 소요되는 금액도 전액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연간 추가재정소요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인 장교 등 인원에 1인당 대출잔액과 대출금리를 곱하여 추계함

- 안 부칙 제2조²⁾에 따라 기존 이용자의 이자도 면제되나, 기존 인원의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이 일부 이루어져 1인당 대출 잔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신규 임용 인원만을 대상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 또한, 입직 경로별 특성을 고려하여 장교 등 중 일부 인원은 추가재정소요 산출에서 제외함
 - (장교 및 경찰공무원) 사관학교 또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우 학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 학자금대출 수요가 발생하지 않음
 - (부사관) 현역병 복무를 마친 후 지원하여 6~48개월 범위에서 복무하는 임기제부사관은 복무기간을 일률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에서 제외함
 - (경력경쟁채용) 일정 기간의 실무 경력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된 인원은 입직 전 소득 및 연령대 편차가 커 대출잔액 추정에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은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이를 최대 상한인 3년으로 가정하고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의무상환 개시 이후 3년간 이자가 면제되므로, 연간 추가재정소요는 당해연도 신규 대상자(1년차)와 직전 2개년도 대상자(2, 3년차)의 연차별 이자 면제액을 누적 합산하여 산출
-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³⁾

2) 안 부칙 제2조(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3)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026. 7.)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이자 면제 대상자 수에 1인당 대출잔액과 대출금리를 곱하여 연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대상자 수) 신규 임용자 수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 비율을 곱하여 산출
 - (신규 임용자 수) 최근 3년 신규 임용 인원의 연평균치가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
 - (대출 이용자 비율) 2025년 기준 전체 대학 재학생 대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 비율(45.4%)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

[표 2] 연간 대상자 수: 2027~2031년

구분	장교	부서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합계
신규 임용자 수(A, 명)	4,400	5,267	2,797	3,529	833	-
대출 이용자 비율(B, %)	45.4	45.4	45.4	45.4	45.4	-
대상자 수(C=A×B, 명)	1,998	2,392	1,270	1,603	379	7,642

자료: 국방부 등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1인당 대출잔액) 2026년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1인당 평균 등록금 대출잔액을 준용하되,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2025년 완제자의 평균 상환기간이 6년이므로, 이자 면제 기간(3년) 동안 대출원리금이 매년 균분 상환된다고 가정

(단위: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2.3	2.0	2.0	2.0	2.0	2.0

[표 3] 1인당 대출잔액 전망

(단위: 천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1년차	7,203	7,347	7,494	7,643	7,796
2년차	—	6,002	6,122	6,245	6,370
3년차	—	—	4,802	4,898	4,996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대출금리) 2021년 이후 연 1.7%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향후 5년 동안 동일한 금리가 유지된다고 가정
- 상술한 가정에 따라 산출한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억 3,600만원, 2031년 24억 8,9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99억 9,300만원(연평균 19억 9,900만원)으로 추계됨
 - 의무상환 개시 이후 3년간 이자가 면제되므로, 연간 추가재정소요는 당해 연도 신규 대상자(1년차)와 직전 2개 연도 대상자(2, 3년차)의 연차별 이자 면제액을 누적 합산하여 산출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대상자 수(명, A)	7,642	7,642	7,642	7,642	7,642	—	—
1인당 누적 대출잔액(천원 B)	7,203	13,349	18,418	18,786	19,162	—	—
대출금리(% , C)	1.7	1.7	1.7	1.7	1.7		
추가재정소요 (백만원, D= A×B×C)	936	1,734	2,393	2,441	2,489	9,993	1,999

주: 1. 가용 통계의 한계 및 입직 경로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신규 임용자만을 대상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였으므로, 법안 시행 당시 기존 임용자의 상환 현황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재정소요는 본 추계결과를 상회할 수 있음

2. 개정안은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이를 최대 상한인 3년으로 가정하고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가용 통계의 한계 및 입직 경로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신규 임용자만을 대상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였으므로, 법안 시행 당시 기존 임용자의 상환 현황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재정소요는 본 추계결과를 상회할 수 있음
- 개정안은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이를 최대 상한인 3년으로 가정하고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재원 조달 비용 지원	186,274	176,563
이전연도 채권발행분	192,174	191,374
당해연도 채권발행분	32,589	32,970
이자면제 지원분	△38,489	△47,781
AI/SW분야 학업장려대출	—	2,923
이자면제 지원	38,489	47,781
군이자면제	529	495
기초·차상위 이자면제	5,547	4,917
다자녀 이자면제	17,731	18,287
중위소득 이하 등 이자면제	9,844	20,362
상환 유예자 이자면제	4,838	3,720
합계	224,763	227,267

자료: 교육부 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